

## 한국 일부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 조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및 환경의학연구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센터\*

최재욱 · 김정아 · 김해준 · 박종태\*

— Abstract —

### A Study of Working Status and Industrial Accident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ae-wook Choi, Jeong-ah Kim, Hae-joon Kim, Jong-tae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Institute for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Korea University  
Center of Occupation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and to recognize the status and the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accidents for migrant workers in a group of 342 who lives in Ansan area, Kyunggi province. By the questionnaire written by 5 languages (English, Bangladesh, Indonesian, Chinese and Korean), the information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ccupational conditions of engaged company and general & occupational health status were obtained from June, 1st to July 30th, 1998. We used the ANOVA to examine differences of working hours, days and average monthly wages between overseas industrial trainee and illegal migrant workers, and by using logistic regression, odds ratio of general risk factors for industrial accidents in migrant worker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The major distribution of nationals were from Philippine, Indonesia, Bangladesh and China(92.1%), and the most of subjects were man(78.9%) and over high school graduate(81.9%).
2. Most migrant workers worked at small scale companies under 50 employees, and engaged in dye · textile · clothing · leather industry. The average working hours were 59.9 hours per week in overseas industrial trainee, 64.9 hours in illegal migrant worker respectively.
3. Trainees have transferred to another company for 1.89 times, and workers who have changed qualification from trainee to illegal status were 3.09 tims, and illegal workers moved 2.36 times. The major portion of reason to move to another company were low salary and overdue salary.

4. Trainees, workers who have changed position from trainee to illegal status, and illegal workers knows 62.27%, 42.31%, and 20.45% in each about legal documentation for foreign industrial trainees in Korea "Regulations for protecting and managing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in Korea" published on March 1995. Additionally, trainees and illegal workers have experienced medical examination by 52.3% and 18.2% respectively.
5. Industrial accident condition from Jun. 1st, 1997 to Dec. 31th, 1997 were as follows : in case of frequent rate, trainees and illegal workers were 30.04, 23.78 each, and 8.6%, 7.4%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respectively.
6. The most common causes and types of industrial accident were inappropriate motions of body and abrasion, and body sites most vulnerable to injury were the hands and fingers.

The results suggest that working status and industrial accidents of migrant workers are very poor in Korea. Therefor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aimed at migrant workers are needed to protect the migrant workers.

**Key Words** : Migrant worker, Industrial accident, Small scale industry, Overseas industrial trainee, Illegal migrant worker

## 서 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4월 말,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전체 외국노동인력의 규모는 전문기술인력분야의 16,438명, 해외투자 등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한 단순기능직 중심의 산업연수생이 약 80,915명, 불법체류자가 134,030명으로 모두 23만 1천 383명에 이른다(법무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1996). 이것은 국내 근로자 1,280만 여명의 1% 이상에 해당(한국노동연구원, 1996)하는 것으로, 이제 이주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수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은 '피교육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주민 불법체류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불법체류 취업자는 체류의 불법성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한국노동중앙연구원, 1995). 이주근로자는 우리 나라에서 산업체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불가피한 인력으로서 그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산업기술연수생' 이든 체류자격 자체가

적법하지 못한 '불법체류 이주근로자' 이든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박석운 등, 1995).

정부가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이 국내 산업장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이명희, 1996).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국내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규나 정부의 보건정책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인체에 유해한 업종(Cho 등, 1985; 윤임중 등, 1992; 대한산업보건협회, 1994; 김규상 등, 1995)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IMF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경제여건상 근로자들의 대량실직과 산업장의 부도사태로 IMF 위기이전의 상황보다 불법취업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강화될 것이며 이주근로자들의 생활상은 물론 산업장내에서의 보건관리 및 산재처리에 대한 처우도 훨씬 열악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 나라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을 통하여 94년 2월부터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94년 9월에는 이미 출국한 산재 피해자에게도 소급해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5년 3월 1일부터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도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임금지불, 금품청산, 근로 시간준수 등의 법적 보호를 부여하며, 또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발표하였다(국정감사자료집, 1997).

현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은 대부분 위험하고 힘들고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도가 평균수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을 받은 이주근로자는 1995년 324명, 1996년 823명, 1997년 1,06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 7월 31일까지 775명이 산재보험지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내부 자료).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지역에 취업중인 산업연수생 및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첫째, 그들의 일반적인 근로조건과 그 동안 조사되지 않았던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여,

둘째, 국내 취업중인 이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관련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도출 및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밝히고,

셋째, 정부의 이주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정책 및 민간단체의 이주근로자 대책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이주근로자의 고용 및 산업보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법취업 및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수도권외의 다른 공단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이주근로자들의 유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이주근로자 상담소와 종교단체를 방문한 사람들과 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등 5개국어로 작성을 하여 작성요령을 간단히 설명하고 조사지를 나누어주어 직접 작

성토록 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주근로자의 고용과 근로관계 및 산업재해에 관한 실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이주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즉, 국적법(제2조)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근로자에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국적을 갖지 않은 무국적자도 있다.

현재 반월 및 시화공단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이 11개국에서 2,600여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수업체를 이탈한 근로자들과 관광 등의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을 감안하면 8,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법무부, 1996). 이는 반월 및 시화공단 전체근로자의 6%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들 공단의 생산과정에 있어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역할이 매우 큼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주로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사업장 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하고 설문시 부담이 적은 이주근로자 상담소나 교회,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였으며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자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불법취업 근로자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현장에 취업하거나 기술연수생으로 들어와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설문조사 기간은 1998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근로자는 360명이었으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이중 342건의 설문조사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1.국적,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월수입 등의 인구학적인 내용, 2. 취업직종, 사업장규모 등 취업업체현황 3. 월 근무일수, 주당 총 근로시간, 잔업여부 등에 대한 취업조건에 관한 사항 4. 산재보험여부, 건강진단 수검 및 결과통보 여부, 의료기관이용경험, 치료비부담, 산재사고의 종류, 사고후 처리방법 및 산재발생 원인 등 건강 및 산업재해관련 사항 등이며, 5. 기타 인권문제 및

향후 한국체류의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3. 분석방법

이주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근로조건 및 산업재해에 대한 실태평가는 단순빈도분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체류허가 집단간의 평균 근무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작업관련요인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AS 6.01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국적분포를 보면 필리핀 132(38.6%), 인도네시아 105(30.7%), 방글라데시 43(12.6%), 중국 35(10.2%) 순이었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베트남, 타일랜드, 몽고 등 매우 다양하였다.

성별은 대부분이 남자(78.9%)였으며 21-30세 사이의 연령분포가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1-2년 사이였으며, 교육정도는 고졸 이상이 280(81.9%)명으로 학력수준은 우리 나라 제조업 근로자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체류허가별 분포는 합법자격인 산업연수생이 220(64.3%)명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처음에는 합법체류자격인 산업연수생 신분이었으나 근로조건 및 기타 생활상의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기한을 초과하였으나 출국하지 않고 남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78(22.8%)명이고 처음부터 관광 및 친지방문 등으로 불법 입국하여 취업한 근로자가 44(12.9%)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대상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취업관련 사항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총 근로자수 5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Table 2), 취업직종은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자 모두 염색, 섬유, 피복, 가죽 피혁업종에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일부는 도금업, 주물 등 1차금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IMF 사태이후 회사의 부도 및 실직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16.9%로 조사되었다(Table 3).

체류허가별 근무조건을 보면, 월 근무일수는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근로자 모두 25일정도 되었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산업연수생은 59.8시간, 불법취업자는 64.9시간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unit : person(%)

Characteristics	Number(%)
Nationality	
Philippines	132(38.6)
China	35(10.2)
Pakistan	4( 1.2)
Indonesia	105(30.7)
Bangladesh	43(12.6)
Srilanka	6( 1.8)
Vietnam	7( 2.0)
Thailand	4( 1.2)
Mongo	2( 0.6)
Others	4( 1.2)
Sex	
Man	270(78.9)
Woman	72(21.1)
Age	
≤20	5( 1.5)
20 - 30	262(76.6)
30<	75(21.9)
Residence period	
Under 1 year	47(13.7)
1 year	146(42.7)
2 years	80(23.4)
3 years	41(12.0)
4 years	19( 5.6)
Over 5 years	9( 2.7)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1( 0.3)
Elementary school	22( 6.4)
Middle school	39(11.4)
High school	177(51.8)
University	103(30.1)
Residence status	
Industrial Trainee	220(64.3)
Was a trainee but now is illegal	78(22.8)
Illegal from the beginning	44(12.9)
Total	342(100.0)

보였으며 또한 식대 및 기타잡비가 포함된 월 평균 총임금 수준도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가 각각 56만원, 69만원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Table 4).

연장작업현황을 체류허가별로 구분하였을 때,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모두 잔업을 하는 경우가 76.8%, 64.7%로 대답하여 차이를 보였으나 야간근무는 산업연수생은 55.4%, 불법취업자는 52.4%를 보였고, 휴일근무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서 64.6%가 한다고 대답하여 대부분 연장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 연장작업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잔업 및 휴일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여러 가지 근로조건 및 임금조건에 의한 사업장 이동횟수를 살펴보면,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산업연수생은 평균 1.89회, 처음부터 불법취업한 근로자는 2.36회였다. 근무처를 옮긴 경험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동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이유는 임금관련문제였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체불임금(35.6%)과 저임금(31.5%), 산업연수생은 저임금이 31.0%, 체불임금이 17.2%로 나타났고 자의가 아닌 회사의 부도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이동해야만 하는 이유도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각각 20.7%와 17.8%나 되었다(Table 6).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s by workplace scales unit : person(%)

Workers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Under 50	146(66.4)	102(83.6)	248(72.5)
Over 50	74(33.6)	20(16.4)	94(27.5)
Total	220(100.0)	122(100.0)	342(100.0)

$\chi^2 = 11.70$  (p(0.01))

### 3. 이주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정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Table 3.** Job classifications of study subjects unit : person(%)

Job classifications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Dye · Textile · Clothing · Leather	57(25.9)	29(23.8)	86(25.1)
Others(include unemployment due to bankrupted)	28(12.7)	30(24.6)	58(17.0)
Machinery	38(17.3)	11(9.0)	49(14.3)
Casting · Iron product · Assembling line	31(14.1)	15(12.3)	46(13.4)
Metal coating	11(5.0)	17(13.9)	28(8.2)
Electricity	25(11.4)	2(1.6)	27(7.9)
Petroleum · Chemical	11(5.0)	9(7.4)	20(5.8)
Food	11(5.0)	0(0.0)	11(3.2)
Wood · Furniture	4(1.8)	4(3.3)	8(2.4)
Paper · Printing	4(1.8)	4(3.3)	8(2.4)
Service(restaurant etc)	0(0.00)	1(0.8)	1(0.3)
Total	220(100.0)	122(100.0)	342(100.0)

**Table 4.** Average monthly wages, days and hours worked by residence status

	Trainees	Illegal workers	t-value
Worked day/month	25.7±2.60	25.8±2.89	0.3109
Worked hours/week	59.9±15.52	64.9±18.71	2.4858**
Total wages/month(won)	564501.7±208540.5	694158.9±170068.6	5.4217*

\* p < 0.01

\*\* p < 0.05

중 "이주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혜택부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산업연수생은 137(62.27%)명이 안다고 답하였고, 불법취업자는 9(20.45%)명만이 안다고 대답하여 각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식의 차이를 보였다(Table 7).

#### 4. 이주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산업재해에 관한 실태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일반 건강진단의 구분 없이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까지 1년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45명(42.4%)이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중 산업연수생은 52.3%,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8%, 불법근로자는 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수검율이 그나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 중 결과를 통보 받은 사람들은 55.9%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연구대상 340명의 이주근로자중 1997년 1년간 작업에 의한 사고로 4일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28명(8.2%)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재해를 당한 28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상처리를 받은 사람은 4명(14.3%) 뿐이었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공상이 9명(32.1%), 기타 본인이 부담하거나 후원단체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연수생과 불법근로자간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9).

한국어 구사정도와 산업재해 발생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

**Table 5.** Situations of extra work according to residence status and company scale unit : person(%)

Extra work		Overtime work		Night shift		Holiday work	
		Yes	No	Yes	No	Yes	No
Residence status	Trainee(n=220)	169(76.8)	51(23.2)	98(44.6)	122(55.5)	154(70.0)	66(30.0)
	Illegal worker(n=122)	79(64.7)	43(35.3)	58(47.5)	64(52.5)	67(54.9)	55(45.1)
	Total(n=342)	248(72.5)	94(27.5)	156(45.6)	186(54.4)	221(64.6)	121(35.4)
	$\chi^2$ -value	5.731		0.284		7.808*	
Company scale	Under 50(n=248)	167(67.3)	81(32.7)	107(43.2)	141(56.9)	150(60.5)	98(38.5)
	Over 50(n=94)	81(86.2)	13(13.8)	49(52.1)	45(47.9)	71(75.5)	23(24.5)
	Total(n=342)	248(72.5)	94(27.5)	156(45.6)	186(54.4)	221(64.6)	121(35.4)
	$\chi^2$ -value	12.128*		2.217		6.751*	

\* p < 0.01

**Table 6.** The reasons to moved to another company unit : person(%)

Reasons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Low salary	9(34.6)	23(23.5)	32(25.8)
Overdue salary	5(19.2)	26(26.5)	31(25.0)
Others (include unemployment due to bankrupted)	6(23.1)	13(13.3)	19(15.3)
Long working time and forced overtime work	3(11.5)	12(12.2)	15(12.1)
Racial discrimination	1(3.9)	9(9.2)	10(8.1)
Poor working condition	0(0.0)	8(8.2)	8(6.5)
Conflict with Korean workers	0(0.0)	6(6.1)	6(4.8)
Physical abuse	1(3.9)	1(1.0)	2(1.6)
Occupational disease or industrial accidents	1(3.9)	0(0.0)	1(0.8)
Total	26(100.0)	98(100.0)	124(100.0)

이 있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12.3% 인데 반해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험은 4.1%로 한국어정도에 따른 산재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체류허가 정도, 산업유무 및 학력수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원인, 종류, 부위 등에 대한 조사시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무리한 동작, 유해물질 접촉, 추락 순이었고,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찰과상이 가장 많았고 염좌, 동상 순이었다. 아울러 신체중 가장 많이 재해를 입은곳은 손과 손가락이었고, 전신, 발, 등의 순이었다(Table 11).

산재요양 이후 작업장 복귀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 15명(53.6%)이 일하던 작업장으로 복귀하였으며 나머지 반수 정도는 회사나 작업 부서를 옮기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었다(Table 12).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발생한 이주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보면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자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율의 경우, 산업연수생은 30.04, 불법취업근로자는 23.68을 나타내어 산업연수생의 경우 도수율이 더 높았고, 재해율은 산업연수생이 8.6%, 불법취업 근로자가 7.4%로 조사되어 불법취업근로자의 산재발생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7.** Knowledge of "Regulations for protecting and managing foreign industrial trainee in Korea" unit : person(%)

Knowledge	Trainees	Trainee→Illegal	Illegal workers	Total	$\chi^2$ -value
Know	137(62.27)	33(42.31)	9(20.45)	179(52.34)	29.781*
Don't know	83(37.73)	45(57.69)	35(79.55)	163(47.66)	
Total	220(100.0)	78(100.0)	44(100.0)	342(100.0)	

\* p < 0.01

**Table 8.** Experience of medical examination at workplace and receives the result of medical check up unit : person(%)

Medical examination	Trainees	Trainee→Illegal	Illegal workers	Total	$\chi^2$ -value
Yes	115(52.3)	22(28.2)	8(18.2)	145(42.40)	25.783*
└─ Received results	65(56.5)	12(54.5)	4(50.0)	81(55.86)	
No	105(47.7)	56(71.8)	36(81.8)	197(57.60)	
Total	220(100.0)	78(100.0)	44(100.0)	342(100.0)	

\* p < 0.01

**Table 9.** Who paid the medical fee after industrial accident? unit : person(%)

Paid by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chi^2$ -valu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2(10.5)	2(22.2)	4(14.3)	0.768
Company	7(36.8)	2(22.2)	9(32.1)	
Self	5(26.3)	3(33.4)	8(28.6)	
Others	5(26.3)	2(22.2)	7(25.0)	
Total	19(100.0)	9(100.0)	28(100.0)	

이주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자신의 한국어 정도, 교육정도,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수검 여부, 사업장 이동경험, 대상자 집단의 평균수치에 근거하여 구분한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 체류허가상태, 작업환경 및 조건에 관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인 회사만족도, 향후 한국체류

의사 이주기간 등과 이주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을 지급하고 안전과 보건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지식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관찰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보호법'에 관한 지식정도 등에 관한 요인들을 logistic regression 분석한 결과 작업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 할 줄 아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근로

**Table 10.** Experience of industrial accidents by residence status and level of communication with Korean unit : person(%)

Experience of industrial accident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chi^2$ -value
Yes	19(8.6)	9(7.4)	28(8.19)	0.166
No	201(91.4)	113(92.6)	314(91.8)	
Total	220(100.0)	122(100.0)	342(100.0)	
Level of communication with Korean	Trouble with work	No trouble with work	Total	$\chi^2$ -value
Yes	19(12.3)	6(4.1)	25(8.3)	6.731*
No	135(87.7)	141(95.9)	276(91.7)	
Total	154(100.0)	147(100.0)	301(100.0)	

\*  $p < 0.01$

※ Industrial accident : accident that needed over 4 days of treatment during 1st, Jan ~ 31th, Dec 1997.

**Table 11.** Cause of injuries, types and injured body site of industrial accident by repetition reply unit : person(%)

Cause of injuries	Case	Types of injuries	Case	Injured body	Case
Inappropriate motions	10(14.3)	Abrasion	15(23.1)	Hands	21(23.3)
Fall	9(12.8)	Sprain	10(15.4)	Fingers	17(18.9)
Contact with hazardous materials	9(12.8)	Frostbite	6(9.2)	Whole body	10(11.1)
Come to the ground	9(12.8)	Fracture	5(7.7)	Feet	8(8.8)
Others	8(11.4)	Stab	5(7.7)	Back	7(7.8)
Electric shock	6(8.6)	Contusion	5(7.7)	Face	4(4.4)
Explosion	4(5.7)	Cut	4(6.2)	Eyes	4(4.4)
Fire	4(5.7)	Skin disease	4(6.2)	Spine	3(3.3)
Crash	3(4.3)	Amputation	3(4.6)	Shoulder	2(2.2)
Constriction	3(4.3)	Asphyxia	3(4.6)	Arms	2(2.2)
Contact with abnormal temperature	3(4.3)	Burn	3(4.6)	Legs	2(2.2)
Collapse	2(2.8)	Bruise	1(1.5)	Buttock	2(2.2)
Bursting	0(0.0)	Poison	1(1.5)	Neck	1(1.1)
		Edema	0(0.0)	Trunk	1(1.1)
				Toes	1(1.1)
Total	70(100.0)	Total	65(100.0)	Total	85(100.0)



**Table 12.** Distribution of return to the company after treatment from industrial accidents unit : person(%)

	Trainee	Illegal worker	Total	$\chi^2$ -value
Return to the company	10(52.6)	5(55.6)	15(53.6)	2.019
Changed company	1(5.3)	1(11.1)	2(7.1)	
Changed working area	2(10.5)	0(0.0)	2(7.1)	
Lost job	1(5.3)	1(11.1)	2(7.1)	
Others	5(26.3)	2(22.2)	7(25.0)	
Total	19(100.0)	9(100.0)	28(100.0)	

**Table 13.** Conditions of industrial accidents for subjects

	Trainees	Illegal workers	Total
Frequency rate	30.04	23.68	28.6
Industrial accident rate(%)	8.6	7.4	8.2

**Table 14.** General risk factors of industrial accidents by logistic regression

Risk factors	Industrial accidents	
	Odds Ratio	95% C. I.
Level of communication with Korean	No problem	
	Problem	3.307 1.352 - 9.307
Medical examination	No experienced	
	Experienced	3.150 1.417 - 7.518
Experience of move to another company	No	
	Yes	2.540 0.508 - 46.154
Education attainment	University	
	Under university	1.321 0.568 - 3.448
Satisfaction of company	Satisfied	
	Dissatisfied	1.289 0.586 - 2.986
Worked day	Under 27 days/month	
	Over 27 days/month	1.141 0.435 - 2.675
Worked hours	Under 62 hours/weeks	
	Over 62 hours/weeks	1.105 0.502 - 2.404
Residence status	Trainee	
	Illegal status	0.843 0.353 - 1.877
Residence period	Over 2 years	
	Under 2 years	0.611 0.274 - 1.328
Willingness to stay in Korea	Yes	
	No	0.580 0.266 - 1.280
Knowledge of "The Act of Protect Trainee"	Yes	
	No	0.492 0.206 - 1.093

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이 3.3배나 높았으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받는 집단에서 산재발생이 3.1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요인들은 산재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 고 찰

1980년대 후반부터 주로 3D업종의 산업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력은 1991년 정부가 산업기술 연수의 명목으로 단순·미숙련 기능의 이주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7년 4월말 법무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취업자를 포함하여 23만 명의 이주근로자가 우리나라 생산역군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 IMF의 경제타격이후로 취업이 어려워져 이주근로자의 숫자가 조금 줄어들긴 하였지만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로 정부에서는 1998년 1월 또다시 산업연수생을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3D업종의 중소기업체들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의 위험이나 도산·폐업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높은 산업재해율 및 직업병 발생 위험을 보이고 있다.

IMF이후 절반 가량이 줄어든 6만 여명에 달하는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산재발생률을 국내 중소기업 수준인 3%만 잡아도 산재환자가 연간 약 1천 6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근로복지공단, 1998). 그러나 1995.1.1-98.7.31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17명이 산재보상신청을 하여 이주근로자들의 산재보상신청기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보상금 총액도 이주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비로 연간 1백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노동부의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주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실태를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이주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보고가 없어 타 연구결과와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어 실제 산재로 인한 보상자료에 의한 분석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주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작업시간은 거의 60-70% 이상이 매달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인선(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렇게 70%이상의 이주근로자들이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는 것은 낮은 임금 속에서도 단시일 내에 돈을 벌어서 빠른기간 내에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자발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의한 강제 잔업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수돌(1996)의 연구에 의하면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수생들을 사용하는 기업가들의 56% 정도는 연수생의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14% 정도는 잔업을 강제로 시키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응답업체의 71.5%는 잔업을 포함해서 주 50시간 이상을 작업을 시키며 60시간이 넘는다고 대답한 업체도 25.4%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임을 고려할 때 이주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잔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잔업 및 휴일근무가 종업원수 50인 이하 작업장(67.3%, 60.4%)에서 50인 이상 사업장(86.1%, 75.5%)에 비해 적은 이유는 IMF로 인한 영세업체의 실질 경제사정의 악화로 작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의 구체적인 사례는 산업연수생의 경우 처음에 한달 치 월급을 이탈을 막기 위하여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연수기간이 끝나서 돌아갈 때 주겠다고 하여 체불하거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은 사업장을 자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이주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1992년 30만원 정도이던 것이 1993년에는 50만원대로 1994년에는 60만원대로 상승하였다(노동부, 1997). 체류허가별 작업조건을 보면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근로자 모두 월 25일 정도의 작업을 하나 작업시간은 산업연수생이 59.9시간, 불법 취업근로자는 64.9시간이며, 월 평균 임금의 경우 연수생, 불법 근로자 각각 56만원, 69만원으로 조사되었고 근로조건 및 임금조건에 의한 사업장 이동횟수는 산업연수생은 평균 1.89회, 연수-불법은 3.09회, 불법취업 근로자들은 2.36회로 나타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 산업기술연수생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은 최초의 연수사업체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임금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박석운 등(1996)의 조사에서는 노동시간의 차이는 없는데 반해 월 평균 임금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노동시간의 차이와 함께 월 평균 임금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일/(월)(24.6일)과 근무시간/(주)(49.2시간) 보다 많으며 이주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수준은 국내근로자가 받는 월 평균 126만원 정도의 절반수준 밖에는 안 되는 형편이다(노동부, 1998).

본 조사에서 이주근로자의 대부분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취업(72.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간이 짧고, 총매출액이 적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관리실태가 열악하고 사업주의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일수록 이주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홍윤철 등 1996), 이직의 주된 이유는 산업연수생인 경우, 저임금(31.0%), 체불임금(17.2%), 불법취업근로자인 경우, 저임금(31.5%), 체불임금(35.6%)의 결과처럼, 임금과 관련되기는 하였으나 안연순 등 (1995)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이직요인에 관한 연구에서처럼 사장 동료와의 갈등, 폭행 등과 같은 인권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도나 실직 등 영세업체의 경제난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산업연수생, 20.7% ; 불법근로자 17.8%)을 해야하는 경우가 인권문제(3.4%, 1.4%)나 열악한 작업환경조건(0.0%, 11.0%) 등의 문제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IMF의 경제적 통치를 받고있는 현 경제사정의 악화를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주근로자들이 특수 및 일반 건강진단의 구분 없이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이주근로자의 145명(42.4%)이 한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산업연수생은 115명(52.3%), 연수생에서 불법 취업한 근로자는 22명(22.8%), 불법근로자는 8명(18.2%)만이 건강진단수검을 한 것으로 나타나 김규상 등(1995)이 조사한 우리 나라 영세업종 근로자들의 수검율인 64.1%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불법 취업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수검율은 18.2%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

단을 받는 사람들 중 결과를 통보 받은 사람들은 55.9%로 대략 과반수 정도만이 건강진단후 결과를 통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모르고 지나치므로 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검진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확인을 통해 심각한 질병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검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강진단을 받는다고 대답한 근로자가 많은 집단이 오히려 산재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어 구사정도에 따라 1997년 1년간 작업에 의한 사고로 4일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작업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 한국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이 12.3%인데 반해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험은 4.1%로 한국어정도에 따른 산재발생위험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logistic regression 분석에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잘하는 사람에 비해 산재사고율이 3.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구사 정도가 산재발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듯이 이주근로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부재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60-70년대 서독파견 광부들의 경우 한국내에서 2개월간의 언어교육을 거쳐 현지에 가셔도 3개월간의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을 거친 뒤 작업에 투입되었고, 작업투입 후에도 상당기간 역할보조교육 과정이 진행되었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안전 및 보건교육이 산재예방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산재를 예방하는데 언어교육의 중요성은 박석운(1996)의 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불법취업 이주근로자에게도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고는 있으나 이주근로자나 사업주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불법체류사실이 노출돼 강제추방과 사업주 제재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보상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내외경제, 1994). 본 조사의 결과에

서도 산업재해를 당한 28명의 이주근로자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처리를 받은 사람은 4명(14.3%) 뿐이었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공상이 9명(32.1%), 기타 본인이 부담하거나 후원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연수생에 대한 산재보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법취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제약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실제로 받기가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유형의 대부분은 무리한 동작(14.3%), 유해물질 접촉(12.8), 추락 및 낙하비레(12.8)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연구의 결과인 무리한 동작(18.9%), 전도(11.9%), 추락(10.5%) 등의 우선순위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유해물질 접촉은 1.7%에 그쳐(노동백서, 1993) 본 조사의 이주근로자들의 산업재해는 국내 근로자들의 산재원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이승한 등(1989)의 조사와 비슷하게 찰과상이 가장 많았고, 신체중 가장 많이 재해를 입은 부위는 손과 손가락이었으며 이것은 여러 연구(차봉석 등; 1989, 문영한 등; 1990)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재해발생의 원인을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재해는 거의가 예방 가능한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차봉석 등 1989).

본 조사에서 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설문조사에 의한 이주근로자들의 산업재해현황을 비교해보면 산업연수생과 불법취업자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수율의 경우, 산업연수생은 30.04, 불법취업근로자는 23.68를 나타내었는데 보상자료에 의한 국내 산재율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것은 1997년도 전체 산업에 대한 도수율(3.28)의 9배 정도나 더 많은 것이며 실제로 가장 높은 산업직종인 광업(21.9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1996년 0.88%에 이어 1997년도의 재해율은 0.81%로 감소하였으나 이주근로자에 대한 재해율은 산업연수생이 8.6%, 불법취업 근로자가 7.4%로 조사되어 역시 가장 높은 광업(5.17%)의 재해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이주근로자들의 산재 사고는 전 산업에 대한 국내 근로자들의 재해율에 비해 8배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취업근로자의 재해율이 더

낮게 보고된 것은 실적의 두려움을 우려한 사업재해 사고에 대한 은폐로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조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주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이므로 본 조사의 결과가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주근로자들의 정확한 산업보건관련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인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실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IMF 사태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 예비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작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후퇴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여기에 규제완화 논리에 편승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전에는 노동자가 산재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상황과 달리, 오늘날에는 고용이나 임금문제에 가려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산업재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의 보호는 차치하고라도 고용조정을 빙자한 해고 대상자 제 일 순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주근로자는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최근의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질박함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해외파견 및 해외취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주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곧 바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 취업하였을 때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 우리 근로자에게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 이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보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이주근로자의 고용과 산업재해에 관한 실태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안전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상담소나 교회, 성당에 나오는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998년 6월 1일 - 7월 30일

까지 조사하여 분석이 가능한 342명의 설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국적분포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국이 조사대상의 92.1%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이 남자(78.9%)이고 교육수준은 고졸이상(81.9%)의 고학력이며, 산업연수생(64.3%), 불법근로자(36.7%)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염색, 섬유, 피복, 가죽, 피혁업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과 불법근로자 모두 월 근무일수는 25일정도 되고 주당 근로시간과 월 평균 총임금은 각각 59.9시간, 64.9시간, 56만원, 69만원으로 불법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월수입이 더 많았다.

연장작업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연수생, 불법 취업자 모두 64-76%가 잔업 및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전직횟수를 보면 산업연수생은 평균 1.89회, 연수생에서 불법신분으로 취업한 근로자는 3.09회, 불법 근로자는 2.36회로 나타났으며 전직 사유는 대부분 저임금과 체불임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주근로자에게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부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산업연수생은 62.27%가 알고 있었고, 연수생→불법근로자는 42.31%, 불법근로자는 20.45%만이 알고 있었다. 한편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험은 산업연수생은 52.3%, 불법은 18.2%만이 건강진단을 받았다

5. 산업재해를 당한 산업연수생의 경우 평균 산업재해횟수는 1.57회이며 불법취업근로자는 0.66회, 산재요양일수는 산업연수생, 불법취업근로자 각각 5.84일, 4.11일로 나타났고 산재보상처리를 받은 사람은 4명(14.3%)에 불과했으며 산재의 원인, 형태 및 사고부위는 각각 무리한 동작과 찰과상, 손, 손가락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에 비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3.3배 산재발생이 더 많이 되며 건강진단을 받는 집단에서 산재발생이 3.1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1997.1.1-1997.12.31까지 산업재해를 살펴보면 도수율의 경우, 산업연수생은 30.04, 불법취업자는 23.68, 재해율은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각각 8.6%, 7.4%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주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후처리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율이 국내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조건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요인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산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작업시작전 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며 건강진단시 누락되지 않고 실시하는 것이 이주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 감사의 글

본 조사를 수행하는데 협조해주신 안산 외국인 노동자 사목센터 갈릴리아,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의 관계자 분들과 경기남부 산업보건연구회 최석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용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년도 국정감사 자료집(Ⅱ), 1997.
- 김 영, 외국인 근로자문제의 현황과 과제. [목포대사회과학연구], 1995. 6.
- 김정만, 최무룡, 김준연, 일부 중공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1993;3(1):127-139.
- 김진수, 외국인 근로자현황과 대책, [한국사회정책], 1995. 12.
- 김선수,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법조춘추], 1995. 1.
- 근로복지공단, 감사자료, 1998. 9.
- 계인선, 시화공단 지역개발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보고서, 1996.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보고서, 1997.
- 노동부, 외국인근로자종합대책, 1995. 7.
- 노동부, 노동백서, 1993.
- 노동정책연구소,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1995. 12.
- 노순규 외,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개선점", [노무관리],

1995. 12.
- 내외경제신문, 1994.
- 문영환, 노재훈, 신동천, 이명선, 조수남. 제철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89; 1(1):61-68.
- 문영환, 차봉석, 노재훈, 이명근, 이경중, 장세진.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분석. 대한산업의학회지. 1990;2(2):153-165.
- 서용길, 김양옥. 산업재해로 인한 척추환자 실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1;3(1):32-42.
- 이경중, 문영환, 차봉석. 산재보험에 있어서 장·단기 입원환자의 진료비 비교. 대한산업의학회지. 1990;2(1):1-12.
- 이명선, 노재훈, 문영환.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지. 1989;22(3):355-367.
- 이명희, 박정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1997;9(2):309-319.
- 이승한, 박정일, 정치경, 조규상. 한국제조업의 산업재해의 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989;1(1):109-126.
-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분임토의보고서, 1995. 12.
- 차봉석, 장세진, 이명근. 산재보험환자의 의료이용. 대한산업의학회지. 1989;1(2):168-179
- 최상률, "외국인 근로자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8.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연수생제도의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 자과정 토론회자료, 1996. 2. 15.
- 홍윤철, 하은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8(1):1-14.
- 96년 노동백서, 노동부 1997.
- 1997년도 국정감사자료집,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Becher S, Sumadi C, Guthoff D, Haas J. Foreign laborers in Germany-an evaluation of occupational health screening of foreign laborers for determining health disorders. Gesundheitswesen. 1997;59(3):174-180.
- Chi PS. Medical utilization patterns of migrant farm workers in Wayne Country, New York. Public Health Rep 1985;100(5):480-490.
- Elkeles T, Seifert W. Immigrants and health: unemployment and health-risks of labour migrant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84-1992. Soc Sci Med. 1996;43(7):1035-1047.
- Kunii O, Nomiya K. Presents status of medical care for foreigners in Tochigi Prefecture, Japan(1). Survey at all clinics and hospital. Nippon Eiseigaku Zasshi. 1993;48(3):677-684.
- Kunii O, Nomiya K. Presents status of medical care for foreigners in Tochigi Prefecture, Japan(2). Illness behavior of foreign workers. Nippon Eiseigaku Zasshi. 1993;48(3):685-691.
- Marsh RE. Socioeconomic status of Indochinese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Progress and problems. Soc Secur Bull. 1980;43(10):11-20.
- Pestalozzi-Seger G. Practical experiences in legal counseling of foreign workers. Ther Umsch. 1992;49(9):645-649.
- Shigeto E, Sato H, Shigeto N, Kamada T, Abe C, Takahashi M, Mori T. An outbreak of tuberculosis involving foreign workers from South America. Kekkaku. 1995;70(5):347-354.
- Sundquist J. Living conditions and health. A population-based study of labour migrants and Latin American refugees in Sweden and those who were repatriated. Scan J Prim Health Care. 1995;13(2):128-134.
- Sundquist J. Ethnicity, social class and health. A population-based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on self-reported illness in 223 Latin American refugees, 333 Finnish and 126 south European labour migrants and 841 Swedish controls. Soc Sci Med. 1995;40(6):777-787.
- Sundquist J. Refugees, labour-migra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opulation-based study of 338 Latin-American refugees, 161 south European and 396 Finnish labour migrants, and 996 Swedish age-, sex-, and education-matched controls.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1994;29(1):20-24.
- Wu, TN, Liou, SH, Hsu, CC, et al., Epidemiologic study of occupational injuries among foreign and native workers in Taiwan. Am J of Ind Med. 1997;31:623-630.